

시멘트 교역과 신개정 미국 반덤핑법

崔 柄 烈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관리과장>

덤핑법이 미국 시멘트 시장에서
수입을 규제하는데 있어 다해온 중대한 역할을
고찰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이 신WTO체제이행수단의 일환으로 채택한
최근에 개정된 미국 반덤핑법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반덤핑법은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시멘트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덤핑법이 미국 시멘트 시장에서 수입을 규제하는데 있어 다해온 중대한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이 신WTO체제이행수단의 일환으로 채택한 최근에 개정된 미국 반덤핑법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개정 반덤핑법은 수입 시멘트에 대해 장래 제기될지도 모르는

여하한 덤핑소송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덤핑법은 1970년대말의 GATT의 Tokyo Round 협상중 채택된 Tokyo Round 반덤핑 법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WTO의 창설에 대한 최근의 URUGUAY ROUND 협상중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협의하여 6조이행 협정이라 불리는 새로운 반덤핑법전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반덤핑 법전은 이전의 법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이다.

미국은 1994년말에 새로운 다자간 WTO협정에 따라 새로운 반덤핑법전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자국법을 개정했다.

더욱 미국은 그 기회에 새로운 반덤핑 법전자체에서 필요로하는 개정 이상으로 국내 덤핑법에 대한 추가개정을 실시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개정내용 및 시멘트 교역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현재와 미래의 시멘트 관련제소건에 대해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2. 덤핑과 시멘트 교역

반덤핑절차는 미국내로의 시멘트 수입을 규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산업에 의한 덤핑절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광범한 제품을 망라하는 300건에 가까운 현안 반덤핑조사명령들이 있다. 어떠한 시멘트 수입에 대한 현안 덤핑조사명령을 포함한 이들 덤핑조사 명령은 미국에서의 교역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 미국 덤핑법

덤핑법은 본래 미국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규하는 법령이 아니라 국제적인 가격 차별 법령이다.

덤핑법하에서 상무성은 외국의 생산자가 미국내 그들 제품가격을 자국내 시장가격이나 적절한 대체 3국 수출가격이하로 책정하는지를 판정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ITC)는 그러한 수입품의 판매가 수입중인 제품과 같은 제

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 또는 물질적 피해의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도 판정해야 한다.

만약 상무성 및 국제 무역위원회 양측 모두 긍정적인 판정을 내면 상무성은 미국관세청으로 하여금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관세를 산출하도록 명령한다.

덤핑관세는 조정된 대미국수출가격과 해당국의 자국내 시장가격이나 대체 3국수출가격과의 차이와 같다.

나. 과거의 시멘트 덤핑소송

미국시멘트 산업은 다양한 국가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수많은 덤핑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근 수년간 다양한 지역의 미국 시멘트 업체가 멕시코, 일본 및 베네주엘라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덤핑 소송절차를 착수했다. 미국 및 일본산 시멘트수입에 대한 최근의 덤핑 조사 명령은 상당한 일반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멕시코건은 미국 멕시코간 교역 관계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이외에 베네주엘라산 시멘트 수입은 현재 "보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협정하에서 베네주엘라의 생산자들은 반덤핑 관세 조사를 보류받는 대신에 미국내 판매 시멘트 가격을 그 생산원가 이상으로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199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베네주엘라의 보류협정은 1997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베네주엘라 보류협정과 함께 멕시코 및 일본시멘트에 대한 현안 덤핑조사 명령은 1994년에 미국에서의 백색시멘트의외 전체 포틀랜드 시멘트 수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및 멕시코 시멘트에 대한 덤핑조사명령은 여전히 발효중에 있으며 상무성은 현재 그러한 덤핑조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역사적으로 시멘트 소송건에서는 덤핑 관세가 아주 높았다. 평균 마진은 멕시코 시멘트의 경우 58%, 일본 시멘트의 경우 64%, 그리고 베네주엘라 시멘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는 49%였다.

아래에서 더욱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멕시코 생산자와 정부는 멕시코 시멘트에 대한 덤핑제소명령에 대항하여 미국을 GATT 배심원회의에 회부했다.

멕시코 정부는 GATT배심원 회의에서 판정승했지만 미국은 오늘까지 그 보고서의 채택을 저지해옴에 따라 그 덤핑명령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비록 현재 외국인 시멘트 수입에 대한 어떤 다른 현안 반덤핑 제소명령은 없지만, 미국은 최근 수년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그리스, 한국, 스페인, 벨지움, 스웨덴

및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외국 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수많은 반덤핑조사를 개시해왔다.

더 나아가 반덤핑 절차는 포틀랜드 시멘트 및 크링카 수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산 칼슘 알루미나 시멘트 및 멕시코산 석회석같은 관련제품에도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덤핑 판정은 교역흐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어 왔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부터의 시멘트 수입이 덤핑조사명령이 내려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덤핑조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외국 생산자들이 덤핑법에 심하게 저촉되지 않게끔 조심하여 그들 제품 가격을 매기게 되었다.

더욱 덤핑법은 시멘트가 미국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지불해야 할 관세액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소급적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없는 수입상들은 일반적으로 덤핑 명령하에 있는 시멘트와 같은 제품의 수입을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많은 산업에 있어서처럼 시멘트 산업에서도 보통 관련 없는 수입상이 수입하기보다는 덤핑명령하에 있는 해당 미국 시멘트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수입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내로의 교역의 흐름에 반덤핑 조사명령이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때문에 시멘트 소송건은

미국내로의 교역의 흐름에 반덤핑 조사명령이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때문에 시멘트 소송건은 일반적으로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절차 단계에서 국내 산업 및 해외 생산자 양측이 줄기차게 다투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절차 단계에서 국내 산업 및 해외 생산자 양측이 줄기차게 다투게 된다.

분명히 반덤핑법은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교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계속하여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외국시멘트수입에 대해 머지않아 추가소송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워싱턴 및 시멘트 산업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이러한 소문의 존재 및 가능성 있는 반덤핑조치의 위협만으로도 최소한 간접적으로 외국 생산자가 중요한 미국시멘트 시장에 접근하는데 영향을 주게된다.

3. 최근에 개정된 미국 반덤핑법

미국 반덤핑법의 기본 구조는 최근의 개정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규정된 미국 반덤핑법의 기본 설명은 아직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반덤핑법전과 신 미국 법제는 반덤핑판세의 계산 및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무성의 덤핑조사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개정 반덤핑법은 수가 너무나 많아 이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반덤핑법을 시멘트 수입에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요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개정내용은 다음의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 평균 미국 가격은 평균 국내 가격이나 제3국 가격에 비교될 것이다.
- 제조자의 반덤핑제소 제기 당사자 적격성.
- 지역적 산업의 제소건일 경우에 국제 무역 위원회에 의한 적당한 지역 산업의 판정.
- 그 아래에서 모든 현안 명령이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조치 존속여부 재심 규정.

· 새로운 교역수준 및 구성 수출 가격 규정을 포함하여 상무성이 수행하는 가격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

그리고

· 분쟁 해결 체계

이들 문제점 하나하나 마다 아래에 토의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적문제로서 이들 개정안의 발효일자가 중요하다. 이들 개정안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제기된 반덤핑제소나 요청된 행정검토에만 적용될 것이다.

가. 가격 평균 내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덤핑판정을 하는데 있어 상무성은 미국내 상품판매가를 자국내 그 상품 판매가와 비교한다. 구법하에서 상무성은 보통 개별 미국 가격들을 수출국의 평균 가격들에 비교한다. 이리하여 한 개별 미국가격이 수출국내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해당상품가격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어도 그 미국가격은 수출국내 평균가격이하일 수 있었다.

이것은 외국생산자가 양시장에서 가격차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덤핑마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신법은 비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동등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단계별 가격 비교 방법을 설정해놓고 있다. 우선 거의 모든 경우에 상무성은 평균 미국가격을

수출국내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분석을 해야 한다.

드물게는 신법은, 예를 들어 판매가 거의 없고 개별 시장에서의 상품이 매우 유사하거나 주문제조되고 있으면 상무성으로 하여금 거래별로 가격을 비교하게 한다.

새로운 가격비교 방법은 미국내에서의 비정상적 판매가 덤핑 마진을 초래할 가능성을 축소시킬 듯 하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의 충격을 줄여 일본 및 멕시코산 시멘트를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마진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당사자 적격성

반덤핑조사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제소에 응하여 시작될 수 있다.

상무성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위하여는 제소하는 회사나 근로자는 Standing(당사자 적격성), 즉, 그들이 국내 산업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국내 시멘트 생산자들의 이해차이 때문에 과거 시멘트제소건에 있어서 이것이 빈번하게 쟁점이 되어 왔다. 몇몇 국내 생산자는 덤핑법을 강경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생산자는 반대하고 있으며 아직도 몇몇 생산자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

구법하에서는 제소를 지지하기 위해 몇 퍼센트의 국내 산업이 필

요한지 불분명하였다.

1992년 미국 Suramerica De Aleaciones Laminadas V. 사에 대한 항소 법원 결정은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제소를 명백히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제소자가 적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접근하에서 상무성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국내 생산자는 제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침묵은 지지와 동일하였다.

지역적 제소건에서 미국의 당사자 적격성은 멕시코 시멘트 수입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명령을 내린후 1992년에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 서부지역인접주의 지역 시멘트 생산자들이 제소하였다. 미국법하에서 어떠한 추가적이거나 특별한 당사자 적격성요건이 지역적인 제소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덤핑조사명령을 받고 있는 멕시코 생산자 및 수출자들은 GATT의 배심원 앞에서 적격성 평결을 포함하여 그 조사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배심원회의는 그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기전에 그 제소가 지역 시장에서 생산 전체나 거의 전체 생산의 생산자를 대표하여 제출되었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 제기가 GATT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하면 배심원회의는 그 지역의

국내 생산자의 전체나 거의 전체가 그 제소를 지지한다는 지역적 소송건에 있어서의 높아진 적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배심원회의는 미국이 그 조사명령을 철저히하도록 권고 하였다.

미국은 배심원회의의 보고서 채택을 막았고 오늘날까지 그 조사 명령의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복잡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멕시코 시멘트 제소건의 역사는 최근 언론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아왔고 특히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 관계에서 골칫거리의 쟁점이 되어 왔다.

사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그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건에서 야기되는 당사자 적격성 규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대부분 새로운 법령 제정시 언급되어 왔

다. 신법은 덤핑제소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 요건을 크게 바꾸고 있다.

현재 상무성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제소건에 대해 당사자 적격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반덤핑 법전에 따라 신법은 제소가 국내 산업에 의해 제기되었는지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 제소를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나 근로자가 적어도 국내 산업생산의 25%를 차지해야 한다.

둘째, 제소를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나 근로자가 제소에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국내산업 생산 부분의 5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역적인 제소건의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 지역 생산을 기초로 적용된다. 구법하

에서와 달리 국내 생산자의 침묵이나 중립은 이제는 그 제소에 대한 지지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명확한 당사자 적격성 시험을 하게끔 파해진 것이며 과거의 덤핑건에서 빈번히 적격성에 대한 쟁점을 둘러싸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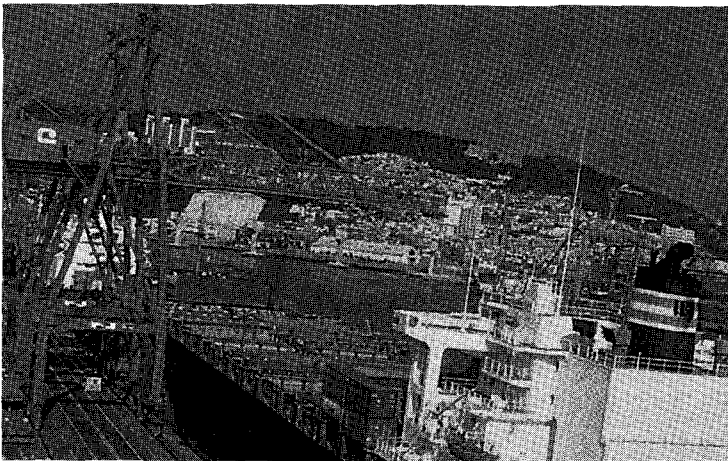
그러나 신 당사자 적격성 규정은 새로운 덤핑 제소건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제기된 시멘트 제소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지역적 산업

대부분의 반덤핑 제소건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하에서 반덤핑법은 지역적 산업이 반덤핑 제소를 하도록 허용한다. 시멘트와 관련된 높은 수송비때문에 시멘트의 수입과 판매는 보통 당해국의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최근의 시멘트 반덤핑 소송건은 지역 산업을 대표하여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멕시코시멘트 수입에 대한 제소건의 탄원은 남부 인접주의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되었으며 베네주엘라 제소건에서의 탄원은 플로리다주를 대표하여 제기되었고 일본시멘트 제소건에 대한 탄원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다.

구법하에서는 일단 반덤핑 명령이 개시되면 일부지역의 국내생산자들만 피해를 입었음을 국제무역위원회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해당국에서 미국 전역에 들어오는 수입시멘트 전부가 관세를 물어야 했다. 신법은 지역적 산업의 소송에서 반덤핑 명령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법하에서 지역적인 제소건의서의 관세는 조사기간중에 관련된 지역에 수출된 외국 생산자들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 시멘트 생산자들에 대해 지역적 산업의 소송건이 제출되었지만 단 1명의 캐나다 생산자가 조사 기간중 그 지역에 시멘트를 수출하였다면 반덤핑조사 명령은 해당생산자의 수입만 다루게 된다. 잔여 생산자들은 그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이 발한후에 여타 캐나다 생산자들이 관련지역에 시멘트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면 당해 생산자들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된다.

반덤핑 관세명령의 적용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의 소송에 있어 제소자는 제소에 있어서 지역적 산업의 자격을 주의하여 정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외의 국내 산업의 구성원들이

지역적 산업의 제소건에 무임 편승하여 반덤핑조사명령 대상국으로 부터의 모든 덤핑 수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 과거의 조치준속 여부재심

더욱심각한 반덤핑 절차의 양상중 하나는 이들이 1회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소독신고처럼 일단 시작되면 매년 후속적인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미국법하에서 제소자나 외국 생산자가 그렇게 요청한다면 상무성은 덤핑제소 명령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는 부담스럽고 외국 생산자들은 장황한 설문서에 의한 답변을 상무성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연 3년동안 최소한의 이윤을 내고 그 명령이 철회되지 않으면 그 조치는 무한히 지속된다.

구법하에서 덤핑제소건이 종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자가 3년 연속 최소이윤을 내거나 제소자가 덤핑제소를 철회하는 것이었다.

반덤핑 법전에 따라 신법은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가 그 명령의 철회로 덤핑 및 물적피해의 지속이나 반복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5년마다 조치준속여부를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멕시코 및 일본에 대

한 현재의 덤핑조사명령은 이조항하에서 검토 될 것이다. 기존의 명령은 1998년 7월부로 재검토할 것이다. 신법은 그 명령의 철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무성은 덤핑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듯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상무성은 이전의 덤핑 마진, 그 명령이 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수입 물량,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다른 가격, 비용, 시장 혹은 경제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상무성이 조치 준속여부 재심 직전의 연례적인 행정검토에서 상당한 마진을 발견했다면 조치준속 여부 재심에서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명령이 철회되면 물적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을 지시받는다.

조치준속여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제 무역위원회는 그 명령이 철회될 경우의 수입가능량, 가격효과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치준속 여부 재심중에 수많은 덤핑조사명령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

이조항하에서 현재의 시멘트 덤핑조사명령이 철회될지 여부는 전

혀 명확치 않다.

상무성 및 국제 무역위원회가 현재 및 미래의 시멘트 덤핑 제소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전에 상무성 및 국제 무역위원회가 조치준속여부 재심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마. 가격계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덤핑조사를 함에 있어 상무성은 보통 수출국의 자국내시장에서의 상품판매가격과 미국내 그상품판매 가격차와 동일한 덤핑마진을 계산한다.

신법하에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정상가격(Normal Value)"이라고 하는 반면 미국 가격은 "수출가격(Export price, EP)"이나 미국내 자회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이 될 수 있다.

신법은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구성수출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들 개정 조치중 가장 중요한 3가지 "구성수출가격 조정", "교역수준조정", "판매전 운임조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1) 구성수출가격 조정

구법하에서 미국내 자회사를 통

상무성 및 국제 무역위원회가 현재 및 미래의 시멘트 덤핑 제소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전에 상무성 및 국제 무역위원회가 조치준속여부재심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상무성은 덤핑계산을 개시하기 위해 첫 번째 관련없는 구매자에 대한 자회사의 가격을 이용했다.

대다수의 외국시멘트 생산자들이 외국생산자들의 시멘트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미국내 터미널이나 레미콘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시멘트제소건에 있어서 보 통있는 일이었다. 많은 경우에 미국 자회사가 시멘트 판매로 번 이윤이 미국 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외국생산자에게 유리했으며 덤핑마진이 더 적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신법은 판매가 미국 자회사나 다른 관계회사를 통해 이루어질때 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신법하에서 미국자회사나 관계당사자의 이윤은 첫번째 관련없는 구매자로의 판매가에서 공제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소건에서 더 높은 덤핑마진을 초래할 수 있었던 덤핑계산을 위한 출발점으로 이용되는 미국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판매, 유통 및 제조경비와 관련된 이윤이다. 이 이윤조정은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대다수 제소건의 덤핑 마진을 증대시킬수 있다.

(2) 교역 수준조정

신법은 상무성으로 하여금 미국내에서 판매의 교역수준과 국내 시장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정상 가격을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무성은 이러한 조정을 함으로써 다른 교역 수준의 다양한 판매 활동이 수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조정의 폭은 두 교역수준간의 가격차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시멘트 기업이 미국의 유통업자에게 판매시 제한된 판매서

비스를 하지만 자국내시장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더많은 판매 활동을 한다면 교역 수준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교역수준조정은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마진계산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새방법론은 마진을 증대시킬 것이며 최소한 덤핑계산에 있어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신법하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통계의 제약 때문에 정상적인 교역 수준 조정을 할수는 없지만 보다 진전된 유통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교역수준에서 정상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는 다른 형태의 교역 수준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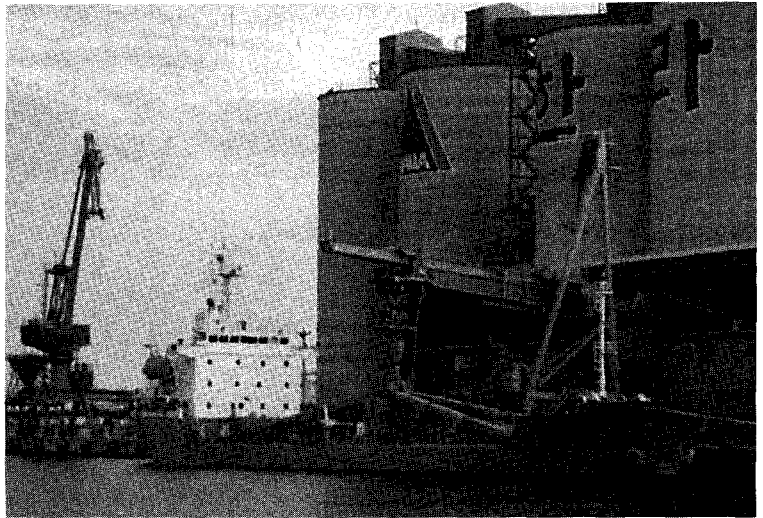
이경우에 상무성은 자국내시장 판매에서 발생한 판매간접비만큼을 감액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판매에 소요되는 판매비 만큼을 제하면 공제가 마무리 된다. 이것은 이전의 덤핑법에 유사하도록 하기위한 것이지만 상무성이 이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또다시 아직 불명확하다.

(3) 판매전 운임

운임은 미국내 시멘트 판매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용은 아시아나 유럽의 먼 나라에서 미국으로 시멘트가 수입될 때 특히 현저하다. 미국과 자국내시장 판매가격의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 반덤핑법은 각각의 가격에서 판매후 운임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전 운임 비용의 취급 또한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법이전에는 판매전 운임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1994년의 멕시코 시멘트제소 건에 있어서 항소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판결에 의하면 상무성은 미국 가격에서 판매전 운임 비용을 공제해야 했지만 자국내시장가격(현재의 정상가격)으로 부터는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었다.

이 불평등한 판매전 운임 비용의 취급이 실질적으로 시멘트 수입에서의 마진을 증대시켰다. 이것이 의회로 하여금 신법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시키게끔 하였다.

신법하에서 판매전 운임비용은 미국가격과 정상가격에서 다시 공제 될 것이다.

바. 분쟁해결

우루과이 라운드중 채택된 분쟁 해결체제는 극도로 쟁점이 있었고 전체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과거의 GATT체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서명당사국들이 타국의 반덤핑 결정을 배심원 회의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회의는 분쟁내용을 청취하고 그 판결이 GATT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권고를 한다. 그러나 과거의 GATT체제와 달리 이제는 분쟁 당사자는 배심원회의의 보고서의 채

택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WTO체제하에서 미국은 멕시코 시멘트 제소건에서처럼 배심원회의의 정식적인 의견채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원도 현재 가능하고 특정한 시한도 설정되어 있다. 당사자들로부터 거부권을 박탈하고 정해진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GATT의 분쟁해결체제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소송건들이 더욱 많이 제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물론 분쟁 해결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됨으로써 그 체계가 많은 비판 및 논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사. 시멘트 덤핑건에 미치는 NAFTA의 영향

마침내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이 가결 됨에 따라 과거 및 미래의 시멘트 덤핑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시멘트 산업 내에서 많은 논의가 유발되게 되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미

국이 덤핑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덤핑이나 다른 불공정 교역법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NAFTA에 적용될수 없게끔 미국이 주장하여 그렇게 되게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시멘트에 대한 덤핑명령을 포함한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과거의 덤핑제소 건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시멘트 생산자들은 앞으로 캐나다에 대한 시멘트 덤핑제소건이나 현재의 멕시코에 대한 명령이 철회되면 멕시코에 대한 덤핑건을 자유로이 제기할 수 있다.

NAFTA 하에서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는 타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불공정 교역법의 적용을 검토중에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3자간의 위원회가 계속 회합을 갖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자는 그 위원회가 타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덤핑 및 불공정 교역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지 않을 듯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4. 결론

신법은 반덤핑관세제소건이 처리되는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다수 이러한 변화는 시멘트 반덤핑제소 건에서 중요했으며 계속 그러할 수 있는 쟁점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의 반덤핑 제소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수의 개정내용중 몇 가지만 논의해왔다.

국내 시멘트 산업의 일원으로서 반덤핑 조사를 받는 외국생산자든 수입자든 산업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향후 전략 기획에 있어 이 모든 변화된 내용을 숙지하고 고려해야 한다. ▲

자료 : CEMENT TRADE AND THE NEW AMENDMENTS TO THE U.S. ANTIDUMPING LAW Spencer Griffith Partner-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U.S.A., INTERCEM AMERICAS

■ 미국의 반덤핑법개정내용
○ 개 요
- 종전 Tokyo Round 하에서의 덤핑 방지법보다 한층복잡하고 포괄적인 개정법이 WTO체제와 함께 태동 (발효일 '95. 1. 1)
- 미국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수입시멘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항 목	구 법	개 정 신 법
가격비교	미국내 개별 수입가를 수입품의 자국내평균가와 비교함으로써 미국내 개별수입가가 미국내 개별판매가 보다 높은데도 수출국내 동제품 평균 판매가 보다 낮을 수 있어 덤핑마진 초래할 수 있었음	미국내 가격이나 수출국내 가격이나 모두 평균가격으로 비교
당사자 적격성 (Standing)	덤핑제소를 위한 산업당사자 적격성을 위한 국내산업 대표도가 모호하여 문제점이 많았음 - 일부는 덤핑제소찬성, 일부는 반대, 일부는 중립	적격성에 필요한 대표도 규정 - 국내산업에 의한 제소로 간주 (미국생산자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국내산업생산의 25%를 차지할때) -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제소로 간주 (제소를 지지하거나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쪽 생산의 50%이상을 점유할때)
가격계산 - 미계열사 이윤 - 가격산정 기준 - 판매전 운임	외국업체의 미국계열사 이윤을 가격계산시 포함시켜 덤핑마진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외국 생산자에게는 유리하나 미국업체는 그만큼 불리한 문제점이 존재 국내시장가격과 미국 가격과의 차이를 덤핑마진으로 책정 상무성은 미국가격에서는 판매전 운임을 공제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품의 자국내 가격에서는 이를 허용치 않음으로 대미 수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였음	미국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업체의 미국 계열사 이윤을 가격계산시 공제 세분화하여 덤핑마진산정 - 정상가격(국내판매가격) - 수출가격(미국내판매가격) - 구성수출가격(미국내 자회사나 계열사의 미국내 판매가격)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미국가격 자국가격 양쪽 모두에서 판매전운임의 공제를 허용 진체적으로 볼때 과거에 비해 외국산 시멘트는 개정신법에 의해 이윤만큼 덤핑마진이 커져 불리한 대신 운임
지역적 산업	일부지역이 특정 외국 시멘트에 덤핑피해를 입어도 해당국의 모든 수입 시멘트에 전국적으로 무차별 덤핑판세부과	면에서는 그만큼 덤핑 마진이 적어져 유리해짐 당해지역의 해당 외국 업체 시멘트에만 덤핑 판세 부과
조치존속 여부재심 (Smsset Review)	외국의 수출자가 3년 연속 최소이윤을 내거나 제소자가 덤핑제소를 철회하지 않는한 반덤핑조치 무한히 지속	미상무성과 국제무역 위원회는 덤핑 및 불적피해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지 여부를 5년 마다 재심 - 반덤핑조치 철회시 물량, 가격 효과, 수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함
분쟁해결	GATT가맹국이 다른 나라를 반덤핑 제소할때 GATT PANEL에서 분쟁내용을 청취한후 이 제소로 인한 GATT의 위해 여부를 확인한후 덤핑추천 - 이과정에서 미국이 개입 전횡	WTO체제하에서는 미국이 PANEL의 견해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못함 - 거부권을 박탈하고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GATT의 분쟁해결 체제의 효용성을 재고할 수 있는 구속력 부여

○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법적용시의 명료성 및 합리성을 개선하였으나 상황의 판단 및 용어의 유권해석을 상무성 및 무역위원회에 일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를 엄격히 적용하여 미국내 계열법인의 판매이윤을 비교가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덤핑방지법에 의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